

채택됨
06/02/20
카사키안/드바인
전원찬성

결의안 20-63호

코로나19와 그의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제3자 음식배달회사가 부과한 수수료의 임시한도를 정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9일, 주지사는 N-33-20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주민들을 집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해당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특정 예외조항에 따라 필요할 때는 예외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2020년 5월 13일에 수정되었고, 음식과 생필품 등 필수 상품을 구하는 특정 예외조항은 있는 주민들이 집에 머무르고,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비필수 업소는 폐쇄하는 재택대피령을 발령하였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대피령으로 시에서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음식점 배달과 테이크 아웃으로 제한한다.

음식점 배달과 테이크 아웃의 제한조치로 많은 식당이 갑자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미 미미한 판매수익으로 운영하던 영세업자들이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업계의 재정난에 얹힌데 얹힌 격이었다.

이 위기에서 식당이 살아남고 시에서 취업소이자 동네의 활력소로 남기 위해 영세업자에게 현재 단 하나의 수익원인 테이크 아웃과 배달로 식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대중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많은 소비자는 배달과 테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 식당에 주문하면서 제3자 앱과 웹사이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3자 플랫폼은 주문당 구매가격의 12%에서 30%까지 범위에서 식당에 수수료와 거래수수를 부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료와 공급품을 구하는 비용도 늘어났다.

식당, 특히 몇 군데 안되는 영세업인 식당은 제3자 플랫폼의 시장 포화상태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업 식당이 처해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3자 플랫폼에서 낮은 수수료를 협상할 교섭력이 제한적이다.

본문에 규정된 주문당 수수료의 한도로 이 비상사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식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당한 공공 목적을 이루게 되는 반면 이 수수료는 적당하다고 인식되므로, 제3자 플랫폼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제3자 플랫폼은 계속 수익이 날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므로, 과거 결의안과 공공명령 만료일의 연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 보전을 위해 추가 보호를 채택해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 공공명령(“명령”)을 이에 채택하기로 **클렌데일 시의회가 결의한다.**

1항.

A. 정의. 이 명령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커버드 업소”란 직접 혹은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상업적 결제 한번으로 시에서 소매점 한 곳이나 여러 곳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같은 날 배달하는 식당을 의미한다. 커버드 업소는 아래 규정된 포플러 레스토랑의 정의에 맞는 식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배달료”는 식품서비스 업소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가 식품서비스 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식품서비스업소를 올리거나 광고하는 비용이나 온라인 주문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가 식품서비스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용어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포플라 레스토랑”은 세계적으로 1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혹은 이미 허가된 지역의 토지사용권이나 허가자격증이 있는 식당의 종류를 뜻한다. 운영 중인 11개 업소나, 혹은 운영이 승인된 지역 토지사용이나 허가 자격증에 추가로, 사업체는 다음 특색 중 두 가지 이상을 유지한다. 상품의 표준화된 진열, 표준화된 건물 정면, 표준화된 실내장식과 색채 배합, 단체복, 표준화된 간판, 상표나 서비스 마크.
 4. “온라인 주문”은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로 제공된 플랫폼의 지원으로, 전화 주문을 포함하여, 고객이 한 주문을 의미한다.
 5. “구매주문”은 음식서비스업소의 메뉴에 나온 음식의 온라인 주문에 대한 총 음식가격을 의미한다. 용어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이 내는 세금, 팁,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6. “레스토랑”이란 글렌데일 시법령 30.70.190항에 정의된 용어인 “레스토랑, 풀서비스,”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제한된 좌석이 있는 카운터 서비스”를 의미하고 포함한다. “레스토랑”이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의 재택대피령으로 식당에서 식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외식 서비스를 갖춘 음식점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7.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는시에 위치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20개 이상 음식 서비스 업소에서 판매용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식사와 음료수를 당일 배달하거나 당일 픽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 B. 비상사태 선포기간의 수수료 한도. 유효기간 동안(아래 정의된 바) 제3자 배달서비스가 배달료, 서비스비용, 처리 비용을 합산하여 온라인 주문의 구매가격의 15%가 넘는 커버드 업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 C. 수수료의 신고. 고객이나 커버드 업소에 대해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가 발급한 영수증에 부과된 수수료, 납부한 팁, 커버드 업소가 제공한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
- D. 커버드 업소에게 직접 준 팁. 커버드 업소의 재량으로,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는 플랫폼에 고객이 커버드 업소에 팁을 주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제3자 음식배달 서비스가 커버드 업소에 기타 지불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러한 지불금은 전부 커버드 업소에 제공해야 한다.
- E. 유효기간. 이 명령은 2020년 6월 3일에 발효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글렌데일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때 종료된다. (“유효기간”)
- F. 유예기간. 2020년 6월 3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가 서비스 사용에 대해 온라인 주문 한 개 당 수수료를 온라인 주문 구매가격의 15%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지 않고, 2020년 6월 17일 전에 커버드 업소에 수수료에서 구매가격의 15%가 넘는

부분을 환불하는 조건이 있다.

G. 벌금과 집행

1.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가 이 명령을 위반한 커버드 업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커버드 업소는 7일 내에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가 7일이 지나도 요구한 환불을 하지 않거나 첫 통지서와 7일 수정기간이 지난 후 제3자 음식배달서비스가 이 명령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는 경우, 커버드 업소는 피해보상과 금지명령구제책을 위한 민사소송을 하여 이 명령을 집행해도 된다. 소송의 승소자는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명령에 따른 위반은 매일 하루단위로 누적되고 이 명령의 위반으로 수수료가 부과된 커버드 업소마다 누적된다. 이 명령에 따라 허가된 민사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시의 행정심리 절차를 따른다. 이 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반은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항의 규정으로 집행된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 혹은 적용없이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H. Agayan

시장

증명함:

Aram Adjemian

시 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63호를 2020년 6월 2일에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롯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Aram Adjemian
시 서기

양식을 승인함	
이름:	<u>마이클 J. 가시아</u>
직분:	<u>시 검사</u>
서명:	<u>Michael J. Garcia</u>
날짜:	<u>2020년 6월 3일</u>